

# 공주 소학동 아이젠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9.02.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한,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19.1.30.)를 받았으며, 사업주체의 소유권보존 및 신탁사항에 대한 등기와 부기등기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후분양주택으로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공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02.)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공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순위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구경하는 집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남도 공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다만 계약금(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19.09.09.(월)	2019.09.10.(화)	2019.09.11.(수)	2019.09.19.(목)	2019.09.30.(월) ~ 2019.10.02.(수)
방 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개별조회(www.apr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 금융결제원(www.apr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r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r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구경하는 집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구경하는 집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허가과 - 호(2019.09.0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창벽로 42-31 (소학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2~15층 2개동 총 65세대 중 일반공급 56세대  
[특별공급 9세대(다자녀가구특별공급 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19년 10월이후 예정(잔금납부 후 입주가능)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공급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세대수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19000593-01	01	58.3041	58	58.3041	21.5062	79.8103	13.7001	93.5104	34.0728	1	-	-	-	-	1	-
	2019000593-02	02	84.7875	84	84.7875	28.9526	113.7401	19.9232	133.6633	49.5507	40	4	4	1	9	31	3
	2019000593-03	03	118.2745	118	118.2745	25.2159	143.4904	27.7919	171.2823	69.1208	24	-	-	-	-	24	2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m<sup>2</sup>,원,부가세포함)

주택형	공급세대수	동구분 (라인)	층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 (5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
58A	1	101동 1호	11층	1	9,710,000	202,720,000	212,430,000	21,243,000	84,972,000	106,215,000
84B	40	101동 1,2,3호	1층	3	14,130,000	262,900,000	277,030,000	27,703,000	110,812,000	138,515,000
			2~3층	6	14,130,000	265,760,000	279,890,000	27,989,000	111,956,000	139,945,000
			4층	3	14,130,000	268,610,000	282,740,000	28,274,000	113,096,000	141,370,000
			5~6층	6	14,130,000	271,470,000	285,600,000	28,560,000	114,240,000	142,800,000
			7~15층	22	14,130,000	274,320,000	288,450,000	28,845,000	115,380,000	144,225,000
118C	24	102동 1,2호	1층	2	19,710,000	329,700,000	349,410,000	34,941,000	139,764,000	174,705,000
			2~3층	4	19,710,000	333,300,000	353,010,000	35,301,000	141,204,000	176,505,000
			4층	2	19,710,000	336,900,000	356,610,000	35,661,000	142,644,000	178,305,000
			5~6층	4	19,710,000	340,510,000	360,220,000	36,022,000	144,088,000	180,110,000
			7~12층	12	19,710,000	344,110,000	363,820,000	36,382,000	145,528,000	181,910,000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산정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면적 합산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 ■ 공통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위탁자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m<sup>2</sup>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19.1.30.)를 받았으며, 사업주체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사항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후분양주택으로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음.
- ▶ 본 아파트는 2019년 5월 22일자 사업주체겸 위탁자, 물상보증인(주)큐피엠, 채무자(주)가연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주)생보부동산신탁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분양계약자는 이의 없이 동의함.
-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형 58.3041m<sup>2</sup>를 제외한 전세대 유상으로 일괄 확장하여 공급하며,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세대별 발코니 확장금액은 아파트 공급계약체결과는 별도로 반드시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함.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 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에 따라 산정되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계약금은 계약시(10%),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40%)에, 잔금납부일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하기로 한 약정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함.
- ▶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에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함.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됨.
-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 및 계약 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 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 분양계약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주)생보부동산신탁이 신탁된 부동산을 환가 및 정산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58.3041	84.7875	118.2745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		3
		일반공급(25%)	1		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합 계			9		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2. 특별공급 공통사항(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억제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280 989 2128 1181">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3.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위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공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_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명칭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위탁자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1,241,026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05,805)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b>신청자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li> <li>•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li> </ul>
<b>청약신청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당진시) 거주 신청자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및 충청남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li> <li>•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li> <li>•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 됨)</li> <li>•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li> <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 청약예금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일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li> </ul> </li> </ul>

2.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가능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3.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내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li> <li>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총 납입금액이 청약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li> </ul>	공주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전용면적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 추첨제 적용</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 전일까지 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의 조건을 충족한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총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초과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li> </ul> </li> </ul>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분(추첨제)</li> <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li> </ul>	

4.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ul> </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ol>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li> <li>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li> </ol>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5.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 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6.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li> <li>■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li> <li>■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위탁자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li> <li>■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li> <li>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li> <li>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li> </ol> </li> </ul>
---

**4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2019.09.09.(월) (APT2you : 08:00~17:30) (구경하는집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구경하는 집
일반공급	1순위	2019.09.10.(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09.11.(수) 08: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구경하는 집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2.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사약서		[구경하는 집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재혼가족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혼부 부부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구경하는 집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구경하는 집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3.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구경하는 집에 비치)	-접수장소

4.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주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b>[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b>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일반공급 PC 청약시]</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b>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b>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일일을 기재

5.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b>본인 신청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li> </ul>
	<b>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1. 당첨자 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9.09.19.(목)</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구경하는 집</li> <li>-아파트투유(www.ap2you.com) 개별조회(PC:www.ap2you.com/스마트폰:APT2you 앱)</li> <li>※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9.09.30.(월) ~ 2019.10.02.(수) (10:00~16:00)</li> <li>장소 : 분양사무실 (충남 공주시 창벽로 42-31)</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 외의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9.09.19.(목) ~ 2019.09.28.(토)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kr)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KB스타뱅킹 앱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 조회」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청약조회→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서비스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제공일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2019.09.19.(목)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3.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p><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 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진시 거주신청자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li> </ul>
<p><b>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구경하는 집)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위탁자일 제출하시기 바람, 방문접수(전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전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제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4.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구경하는 집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함.

## 1. 계약체결 절차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과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을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각각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체결	계약체결 장소
정당 당첨자(일반공급/특별공급)	2019.09.30(월) ~ 2019.10.02(수), 3일간 (시간 : 10:00~16:00)	공주 소학동 아이젠아파트 분양사무실 (충남 공주시 창벽로 42-31)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됨.
- 아래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2.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input type="radi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
	<input type="radi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자	<input type="radio"/>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input type="radi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input type="radio"/>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radi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input type="radio"/>		• 임신증명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input type="radi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input type="radio"/>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당첨 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input type="radi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input type="radi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input type="radi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input type="radi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 재당첨제한 등 당첨사실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한 소명 서류	
<input type="radio"/>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위탁자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3.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의 계좌는 부활되지 않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도 입주 예정자 중 부적격 사항 확인, 이중 당첨자, 서류의 결격·위조, 불법·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부적격자는 위탁자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는 계약하기 전에 계약예정 세대와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위탁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입주 또는 잔금납입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4. 분양대금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계좌			타입	세대수	동	호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신한은행	140-012-782677	(주)생보부동산신탁	34평형	21	1동	101, 102, 103, 201, 202, 203, 301, 302, 903, 1001, 1002, 1003, 1101, 1202, 1203, 1302, 1303, 1402, 1403, 1502, 1503
			43평형	14	2동	101, 102, 201, 202, 301, 302, 501, 502, 601, 602, 1101, 1102, 1201, 1202
신한은행	140-012-782740	(주)생보부동산신탁	34평형	20	1동	303, 401, 402, 403, 501, 502, 503, 601, 602, 603, 701, 702, 703, 801, 802, 803, 901, 902, 1102, 1103
			43평형	10	2동	401, 4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 ※ 본 아파트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사업주체)는 위탁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 동·호수가 상이하여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동·호수별로 상이하므로, 계약자는 해당 세대별 분양대금을 반드시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계좌의 혼동 및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양대금의 오류입금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지정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 본 아파트의 주건축물 표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제1동 및 제2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파트 외벽에는 제1동은 101동으로, 제2동은 102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예시 : 101동 1004호 홍길동 : 1011004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 1020201홍길순)

**5.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위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6.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주택은 아파트 공금 분양가와 발코니확장 공급가에 대해 계약자 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당 아파트는 후분양 공급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계약자 사전방문일정은 없으며, 계약예정자 및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전에 계약예정 세대와 공용부분의 시설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2019년 10월이후 예정** (항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당 아파트는 후분양 공급주택으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입주가 가능하며,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여 계약상의 약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잔여공사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등

## 7 발코니확장 공급 계약

### 1.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전체 세대수	타입	층별	세대수	확장위치	부대설치	확장금액 (각세대별)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잔금일)	
84.7875	40	34평형	전층	40	거실발코니, 침실3 발코니	거실 및 침실3 발코니도어 및 시스템설치, 수납(현관 신발장) 빨래건조대(전동식) 설치	9,900,000	990,000	8,910,000	추가발코니확장불가능
118.2745	24	43평형	전층	24	거실발코니, 침실4 발코니	거실 및 침실4 발코니도어 및 시스템 설치, 빨래건조대(전동식) 설치	9,900,000	990,000	8,910,000	추가발코니확장불가능

### 2.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내부의 쾌적성 및 공간성 확보와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를 일괄 확장으로 공급되는 것이며, 실별, 위치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상기 아파트는 주택형 58.3041㎡를 제외한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유상으로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반드시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을 사업주체 및 위탁자에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은 주택형 84.7875㎡는 거실과 침실3, 주택형 118.2745㎡는 거실과 침실4에만 적용되며, 주택형 58.3041㎡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유상제공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계약자에게 관할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변경사항은 행정처리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확장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취소, 추가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 및 위탁자가 인·허가를 받은 확장공사 이외에는 추가공사[입주자가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기 확장공사의 변경(부분포함) 또는 추가로 개별시공 등 포함]는 구조적, 법적으로 불가함을 이해하고 동의함.(이를 위반하여 하자발생, 타입주자에게 불편을 야기 및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체 및 위탁자와 무관하며,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유의바람.)
- 어떠한 경우에도 전면 발코니 옆 콘크리트 화단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음.(임의 철거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확장은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관리부족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시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화재 감지기 및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면 발코니의 세대간 경계벽은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로 설치하였음.
- 발코니확장과 관련한 안하가, 공사, 하자이행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해 면책되는 것에 동의한다.
- 발코니 확장시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으로 비확장시와의 발코니 바닥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공상태는 계약 예정 세대에서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3.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식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약			타입	세대수	동	호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신한은행	140-012-782677	(주)생보부동산신탁	34평형	20	1동	101, 102, 103, 201, 202, 203, 301, 302, 903, 1001, 1002, 1003, 1202, 1203, 1302, 1303, 1402, 1403, 1502, 1503
			43평형	14	2동	101, 102, 201, 202, 301, 302, 501, 502, 601, 602, 1101, 1102, 1201, 1202
신한은행	140-012-782740	(주)생보부동산신탁	34평형	20	1동	303, 401, 402, 403, 501, 502, 503, 601, 602, 603, 701, 702, 703, 801, 802, 803, 901, 902, 1102, 1103
			43평형	10	2동	401, 402, 701, 702, 801, 802, 901, 902, 1001, 1002

- ※ 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약(사업주체)는 위탁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 동·호수가 상이하여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약자 동·호수별로 상이하므로, 계약자는 해당 세대별 발코니 확장대금을 반드시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계약자의 혼돈 및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분양대금의 오류입금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 지정된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지정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 본 아파트의 주 건축물 표시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제1동 및 제2동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파트 외벽에는 제1동은 101동으로, 제2동은 102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 1004호 홍길동 : 1011004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 1020201홍길순)

4.기타 유의사항 : 당사에서는 기타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별도 가구 등)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위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기 타

## ■ 공통 유의사항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함.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19.1.30.)를 받았으며, 사업주체의 소유권보존 및 신탁사항에 대한 등기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후분양주택으로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음.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 •당 아파트의 잔여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파업, 태업,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 위탁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 바람.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 바람.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위탁자는 일체 책임지지 아니 함.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현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당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의 대상이 아님. •당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은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위탁자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일영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의한 것임.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구경하는 집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당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주택소유에 대한 유의사항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세대별 집합건물 등기사항은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이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매매대상 부동산은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 분양 계약자는 계약시 설정 담보권에 대한 대출여부(추가대출포함) 또는 대한대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은 오로지 분양 계약자의 몫이며, 사업주체와 위탁자는 이와 관련한 일체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분양 계약자는 대출시(추가대출포함) 채권은행에 채무인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양 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 또는 대한대출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한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 계약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위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분양 계약자는 대출승계(대출승계시 추가대출포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대한대출 또는 추가대출금액 중 해당비용을 공제하고 입금하였을 경우 수수료 등 제반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은 별도로 사업주체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분양 계약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거부할 경우 사업주체 또는 위탁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분양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분양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분양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분양 공급대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사업주체 및 위탁자는 분양 계약자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분양 계약자는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음.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정상 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분양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공급대금의 일부를 충당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의 분양 계약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분양 계약자는 대출금융기관을 위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함.

##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쇄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및 확인하시기 바람.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서명]는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작은 주택형의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면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선순위 청약접수결과와 일반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 무효처리 됨.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됨.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사시,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 및 위탁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 용자지원관련 유의사항

•본 아파트는 분양 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의 일부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분양계약자는 필요시 자기의 판단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여부와 대출진행에 대해 사업주체와 위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사업주체 및 위탁자와 무관한 분양 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 계약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와 위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공급대금의 일부를 충당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분양 계약자는 대출금융기관을 위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함. •분양 계약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거나, 대출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위탁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 구경하는 집 유의사항

•구경하는 집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구경하는 집의 전사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경하는 집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선택옵션 품목, 무상품목, 전사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음. •구경하는 집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조경, 식재,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진입도로, 주변 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은 반드시 확인 바람. 이는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한 것으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위세대의 발코니는 위치, 층, 향, 햇빛의 수용량 및 수용시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장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구경하는 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반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창호 등의 규격과 실내 공간의 규격(폭, 너비, 높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하는 집은 해당 세대에 분양 계약이 있을 경우 분양 계약자의 요청으로 폐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쇄 전 구경하는 집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구경하는 집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터리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과 구경하는 집을 방문하여 확인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경하는 집은 주택형 84.7875m<sup>2</sup>과 주택형 118.2745m<sup>2</sup>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주택형 58.3041m<sup>2</sup>의 경우는 카탈로그나, 직접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구경하는 집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기 바람. •본인의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구경하는 집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바람. •구경하는 집에 설치된 감지기,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분양홍보물관련 유의사항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급 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경하는 집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바람. 계약체결 시 구경하는 집,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이 있음. •각종 홍보물

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나,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정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외부색채, 외벽외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D/A전장탑(Top Light),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거보관대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위탁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 발코니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본 아파트는 내부의 쾌적성 및 공간성 확보와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허가권자의 인•허가를 받아 세대별 발코니를 일괄 확장(주택형 58.3041㎡는 제외)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함. •발코니확장 공급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취소, 추가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 및 위탁자가 인•허가를 받은 확장공사 이외에는 추가공사(입주자가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기 확장공사의 변경(부분포함) 또는 추가로 개별시공 등 포함)는 구조적, 법적으로 불가함.(이를 위반하여 하자발생,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야기 및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주체 및 위탁자와는 무관하며,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바람.) •전면 발코니 옆 콘크리트 화단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음.(임의 철거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바람.) •발코니 확장금액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분양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은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관리부족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발코니 확장시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며, 화재감지기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따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과 연결되는 실의 경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 무상지원에 관한 유의사항

•발코니 샷시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품목으로 본 아파트의 분양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음. •발코니 샷시는 사업주체 및 위탁자가 일괄적용 설치 시공한 모델로서 계약자의 개인적인 취향,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제조사와 모델을 변경 요구할 수 없음. •발코니 샷시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또는 변경요청을 할 수 없음. •발코니 샷시의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위탁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설치 시공사에게 본인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함.

#### ■ 단지 및 주변여건관련 유의사항

•단지 내 공동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은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공되겠으며,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방음벽 등 단지 내 시설물, 아파트 배치,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주변시설(도로 및 진입로 포함)과 주변 건물의 신축,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에 따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 위탁자와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자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의 단지 내•외 간 레벨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 후면, 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와 방음벽 및 방음림 등 식재여부,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이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위탁자와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위탁자와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저층부 및 일부 세대는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동배치상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위탁자와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하여 부지 내 지역압입기가 설치되었으며, 부지 내에 설치 된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여부가 입주인에게 있음.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 부담임. •당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당 아파트 단지 동측 근린공원 경계부위는 인•허가청과 협의에 따라 담장 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단지와 단절될 수 있음. •당 아파트는 대지의 레벨차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 단지 내 레벨차이가 발생할 경우 유의하시기 바라며, 레벨차에 일부 호실에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본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의 공공기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소화동 4반(공주시 창벽로 42-31)으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유입 학생은 초등학교는 공주중동초등학교, 중학생은 공주학군(공주중, 봉황중, 공주여중, 공주영명중, 공주북중, 공주사대부중)에서 수용가능하나, 향후 여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설계관련 유의사항

•본 아파트는 기축물(지하 및 지상3층)을 기초한 신축으로 기존의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청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주택형별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계약할 세대를 직접 방문,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후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조정식재 구간 중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사 공기안전메트 설치를 위해 식재에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각각 2,780mm, 2,300mm임.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동의함. •계약시 분양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실 대지 측량결과에 의한 설계변경, 기타 주택법,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에 동의함.

#### ■ 동별 유의사항

•각 동별 저층 세대는 전면에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어 사생활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측면세대의 경우 옆면에 도로와 가옥이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 •각 동별 전면부에 도로부분을 마주하고 있어 사생활권 및 소음피해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각 동은 전면부에 단지 내 소방도로가 인접하여 사생활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1동과 2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사생활권 및 소음피해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각 동별 측면세대의 경우 저층부에서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한 옹벽에 의한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1동 1001호의 옥상(1동 1101호의 발코니)은 공유부분에 속하나 1101호 세대내부를 통해야만 사용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1101호 세대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1동 1101호의 발코니는 실제 공유부분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동 우측에 위치한 전신주는 해당 동의 미관과 주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설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위탁자,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저층 세대의 경우 지하주차장의 송풍구 방향이 당 아파트의 후면으로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으로 인하여 조망의 방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 기타 유의사항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위탁자와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하자보수 책임의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임시사용승인도면 포함)으로 함. •마감자재 내용 및 가구의 구성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경하는 집과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단지내 부대시설의 홍보물 및 모형, CG에 표현된 마감재, 집기류, 운동시설, 가구 등은 참고 이미지로서, 본 공사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며, 계약자가 향후 입주자 대표회이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기류, 운동시설, 가구 등을 구입, 관리, 운영하여야 함. •본 아파트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위탁자와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방가구가 및 불박이장, 욕실가구가 설치되는 후면벽체 및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계단실 창호 포함)는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대부분 고정창(일부만 개폐됨)으로 시공되며,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에 환기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 •중공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중공 후 사용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단지 내 공개공지,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의 변경,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됨. •창벽로(강남교차로~소학회전교차로)에서 본 아파트로의 진입도로는 기존도로로 정상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내 도로작업으로 서로 레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전용 필로티 진입도로와 단지내 도로의 레벨은 서로 순응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일부 조정시공 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진입도로와 마감공사 등을 진행(입주 후 포함)할 경우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아파트는 기축물(지하 및 지상3층)을 기초한 신축이며, 기축물(지하 및 지상3층)을 기초한 전동 안전전단 및 검사(한국건설안전공사)를 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기축물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공주시내 강남권에 속해 있으며, 교육,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며, 본 주택 진입로 옆 건설기계장비의 산재, 본 아파트 뒤편(북쪽)에 위치한 신진부패 웨딩홀, 실내골프연습장 등의 영업으로 인하여 통행, 차량의 진출입, 조망,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시공사에서 실시한 전문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와 감리단의 의견을 통해 일부분의 배근 및 벽두께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

된 부분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받았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의 시공사는 시공사의 본점 소재지 관계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함. •세대내 진입마당의 벽체에 설치한 샷시의 하중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한 일부 자체 마감노출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전면 발코니의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은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임을 인지하고, 화재 등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하시기 바람.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사용승인이후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위탁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 및 위탁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와 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 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전수관리금(비)이 부과됨. •단지내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단 공급주택이 준공 후 분양임을 감안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와 위탁관리업체간의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서"(2019.1.29)에서 정하는 최초 위탁관리의 계약기간(5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추후 잔금납부일로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입주지정기간 중에 입주하는 경우는 실입주시부터 부담) •본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입주시 단지 배치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본 아파트 저층부 외벽바깥은 위탁자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였음. •본 아파트의 외관(동별 색채)은 관할 행정청의 심의, 경관 및 색채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향후 변경될 수 없음. •단지 내외의 조명(경관, 지하주차장, 진출입현관, 출입센서등 등)이 포함된 공용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전기실, 기계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규격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아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통신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리침, 산림재해 및 산불예방을 위한 무선감시카메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 및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9호에 의한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표시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본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부가세포함)

구분	건축	소방	전기	통신
회사명	(주)서진이앤씨	(주)금강소방감리	일렉트로 컨설팅	(주)건창기술단
감리금액	319,000,000	23,650,000	37,400,000	3,300,000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2019.1.30)를 받았으며, 사업주체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사항에 대한 등기와 부기등기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후분양주택으로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겸 수탁자	위탁자	시공사	채무자
상호	(주)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큐피엠	주식회사 양지종합건설	주식회사 가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대치동,삼성대치타워)	인천시 연수구 비류대로 291, 29(청학동)	인천시 부평구 마장로 412, 1동 701호(청천동)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33번길 19 5층 501-2호(상동,금강빌딩)
등록번호	110111-1617434	120111-0875768	200111-0469613	110111-6154134

■ **분양문의**

분양대행사	분양문의전화	분양사무실 위치
상호 : (주)세븐파트너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2길34, 4층(신사동,선인빌딩) 등록번호 : 110111 - 6154134	☎ 1670-2808	충남 공주시 창벽로 42-31 (소학동)

■ **부동산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1.본 아파트는 2019년 8월 23일자 사업주체 겸 수탁자 (주)생보부동산신탁, 위탁자겸 물상보증인 (주)큐피엠, 채무자 (주)가연이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 (주)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되는 것[위탁자는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주)가연은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용자에 줄 목적으로 (주)가연 명의로 용자를 받은 채무자이며, 차주의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는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있음.]으로 분양공급 계약상 실질적인 매도인은 위탁자임을 확인한다.
- 2.본 아파트의 분양공급 계약상 매도인의 책임은 (주)큐피엠에게 있고, (주)생보부동산신탁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주)생보부동산신탁은 (주)큐피엠으로부터 위임받은 매매대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한다.
- 3.(주)큐피엠이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주)큐피엠이 보유한 본 사업상 매도인 및 위탁자로서의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 4.(주)생보부동산신탁은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에 정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신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에 정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실행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5.분양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개별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등기되었고, 대지권이 전부 (주)생보부동산신탁에게 이전(대지권의 표시)되었음을 확인하고 동의함.
- 6.본 아파트의 현재 소유자는 (주)생보부동산신탁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주)큐피엠의 책임으로 진행할 예정임.
- 7.분양계약 체결시 분양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환불책임은 (주)큐피엠에게 있으며, (주)생보부동산신탁에게는 그 책임이 없음.
- 8.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분양대금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음.
- 9.분양계약자는 (주)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모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주)양지종합건설과 (주)큐피엠에게 있음.
- 10.분양대금은 담보관리신탁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우선수익자), 공사비, 그 밖의 부대사업운영비 등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11.(주)큐피엠은 본 분양계약 상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권리 업무 및 분양사업자,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반환, 지체상금배상, 하자보수책임)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부담하며, (주)생보부동산신탁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양사 간의 체결한 계약 및 약정서 등에 따름)
- 12.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주)큐피엠과 (주)생보부동산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주)생보부동산신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큐피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됨.
- 13.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함.

■ **구경하는 집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창벽로 42-31 (소학동) 당 사업지 현장 내**

※ 본 입주자모집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구경하는 집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